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28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채현일·문금주·권향엽

윤건영 • 허성무 • 박해철

박민규 • 김남근 • 김문수

조인철 • 박용갑 • 이광희

전진숙 · 양부남 · 오세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 · 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 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사전투표참관)	1 • 2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
		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
		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
		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
		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
		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u>③</u> ~ <u>⑤</u> (생 략)		<u>④</u> ~ <u>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